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한국 이제 과거사 싸움해야 하는 수준은 넘어선 나라다



조선일보 오피니언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부르며 대일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북한 위기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비판하거나 반성·사죄를 요구하지 않고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과거 대통령들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날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 범죄’ 같은 표현을 쓰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며 일본의 책임을 부각했다. 3·1절과 광복절마다 대체로 비슷한 기념사가 반복됐다. 이런 연설 뒤 한일 관계가 서먹해지고 과거사 문제도 더 꼬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곤 했다.

한국 정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반일(反日)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정해진 패턴이었다. 국익을 위해선 미국의 동맹이자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계적으로 일본 때리기에 동조했다.

정치권 전체가 반일을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에 유화적인 정치인에게 ‘친일파’ ‘토착 왜구’라는 시대착오적 공격이 가해지곤 했다. 해방 후 두 세대가 훨씬 지난 지금 세상에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가 어디 있나.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다.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2020년에 이미 한국(4만3319달러)이 일본(4만1775달러)보다 높아졌다. 반도체·스마트폰 등의 IT 산업이나 조선·배터리·석유화학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는 ‘라인’도 네이버가 만든 것이다. ‘K웹툰’은 일본 ‘망가(만화)’의 아성을 무너트렸고, BTS와 ‘오징어게임’ 등으로 상징되는 K컬처는 일본의 문화 산업을 뛰어넘었다.

이런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일본 얘기만 나오면 적개심을 터트려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감정적 반일은 문재인 정부 시절 극에 달했다. 이전 정부에서 봉합했던 과거사 문제들을 헤집어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자초했고, ‘죽창가’ ‘노 재팬’ 같은 반일 선동을 부추겼다. 해방 직후 신생국에서 있었을 법한 일들이 21세기 선진국에서 벌어졌다.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가해의 역사는 결코 잊어서도, 덮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과거에 매몰돼 관성적으로 일본을 때리는 것은 국가 이익을 해치고 전략적 선택지를 스스로 제약하는 일이다. 한국은 이제 과거로 논쟁하는 나라의 수준을 넘어섰다.

출처:조선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오색 케이블카 재추진, 위대한 강원도민의 승리



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양양군 오색리에서 설악산의 대표적인 봉우리 중 하나인 끝청을 연결하는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면서 추진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어제(2월 27일)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난제 중 난제로 꼽혔던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으면서 사업비 확보 및 후속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한때 백지화 위기에 몰리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당초 환경 훼손을 지적하며 사업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 말 양양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결의 취소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해 승소를 끌어냈습니다. 국민권익위 인용 결정에 따라 원주환경청은 양양군에 재보완 요구를 했으며, 이에 따른 보완서류를 환경부 및 기상청 국책연구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건부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동안 일곱 차례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물론 여덟 번에 걸친 삭발투쟁 등을 겪으며 어렵게 거둔 성과여서 지역사회에서는 환영과 함께 기대감이 남다릅니다. 그러나 1000억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후속적으로 백두대간 개발행위를 비롯한 10여 개의 인허가 절차와 각종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향후 과제가 만만치 않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양군과 강원도는 각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26년으로 예정된 사업 준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요한 관문을 넘은 만큼 지금부터는 경제적 파급력을 확대해 사업 기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내실 있는 추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설치된 여러 지역의 케이블카사업이 당초 예상한 경제적 기대효과와 달리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색케이블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일자리가 최대한 창출되는 내실있는 투자 및 운영 방안 수립에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하 양양군수가 기자회견에서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성급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모든 국민이 아무런 장애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앞선다”라고 밝힌 것처럼 세계적인 명물 사업으로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 공공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출처: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행정안전부

지자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대폭 높아진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발표 -

- 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하여 인사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 이번 계획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4개 추진과제),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5개 추진과제),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3개 추진과제) 등 3대 추진전략의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5개 법령과 예규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①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① 휴직자 결원보충 탄력성 제고	③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자율성 강화
	②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	④ 공무원 인사이동의 유연화 지원
②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④ 공무원 부패·공익신고자 등 보호
	② 징계처분 실효성 확보	⑤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
	③ 겸직 허가제도 관리 강화	
③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	① 재난시 적기임용 융통성 제고	③ 응시수수료 반환 및 시험기일 정비
	②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근거 마련	

1.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 먼저,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한다.
 - 현행, 출산휴가(90일)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에만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으로 인정해 휴직 등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
- 지방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을 추진한다.
 -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 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무원이 희망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 * 현재, 지방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으로만 보상 가능
- 지자체의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자율성을 강화’한다.
 -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3년의 전보제한을 적용하되 이에 따른 수당 지급
 - 종전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을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무원 인사이동의 유연화’를 지원한다
 - 국가공무원이 강임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종전 국가직 경력 인정여부를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직무분야·직위군 변경없는 경우)이 가능하게 되었다.
 - * 계급·직군·직렬 구분없이 한 직위에서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

2.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 ‘지방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 지방공무원 대상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가 재직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 종전에는 성비위(「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갑질 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 관리를 강화’ 한다.
 - 지자체장의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심사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 ‘지방공무원의 부패·공익신고 등의 보호를 강화’한다.
 -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도 직접 규정하여,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공무원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를 추진한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 시험응시자와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시험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3.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

- ‘재난 등 긴급상황시 조속한 임용’이 가능해진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안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 협의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밖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및 시험기일 정비’ 등도 추진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 주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있다”라며, “오늘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지자체의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 사용처 재편, 구매한도 축소 등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사항 발표 -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하여,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 *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이마트·홈플러스는 기존에도 가맹 배제)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한다.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 앞으로는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여,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 (보유한도 예시) 1·2월 각각 최대한도인 70만원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경우 → 3월에는 보유액이 140만원이므로 신규 구매는 10만원까지만 허용
-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 그간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여,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구분	'22년		'23년
사용처	법상 중소기업이면 허용 지자체 조례·지침으로 추가 제한		지침으로 통일적 기준 설정 - 연 매출액 30억 이하만 가맹점 허용 지역 여건에 따라 업종 제한 병행
구매한도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1인당 월 70만원 이내
보유한도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 자율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할인율	원칙	10% 이내 지자체 자율	기존동일
	예외	15%까지 한시적 상향 허용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등 꼭 필요한 경우 추가 상향 허용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 4대사회보험 보험료 환급액, 어선 보유 여부도 조회 가능 -

- 행정안전부는 3월 3일(금)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이로써 안심상속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되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까지 약 124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 3월 3일부터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안내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되었다.
- 그동안 행안부는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 2015년 6종을 시작으로, 꾸준히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번에 추가되는 2종까지 총 19종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6종 도입)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2017년, 3종 추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2018년, 2종 추가)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2020년, 3종 추가)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2021년, 2종 추가)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2022년, 1종 추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며, “국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방안



윤 소 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 주도의 5개년 전략계획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도입 배경 및 특징

- 지역소멸로 인한 국가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함('22.6.10., 시행'23.1.1.)
 -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연 1조원 규모의 재원(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2022년 ~ 2031년) 지원할 계획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국가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됨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은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로 수립·추진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역 주도의 상향적 접근방식(시·군·구 → 시·도 국가 순으로 계획 수립)이 특징임
 - 또한, 지자체가 스스로 설정한 전략과 목표에 맞춰 5개년의 계획기간(2022년 ~ 2026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는 전략계획임
-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계획의 수립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강화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의 주체, 범위, 원칙

구분		내용
계획수립의 주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국가
계획수립의 범위	시간	5년('22년~'26년)
	공간	지자체의 관할영역 및 생활권에 해당하는 영역
	내용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분석,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 및 전략, 중점과제, 추진체계,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
계획수립의 범위	상향적방식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군·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기본계획은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해야 함
	주민참여·의견수렴	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재원확보 노력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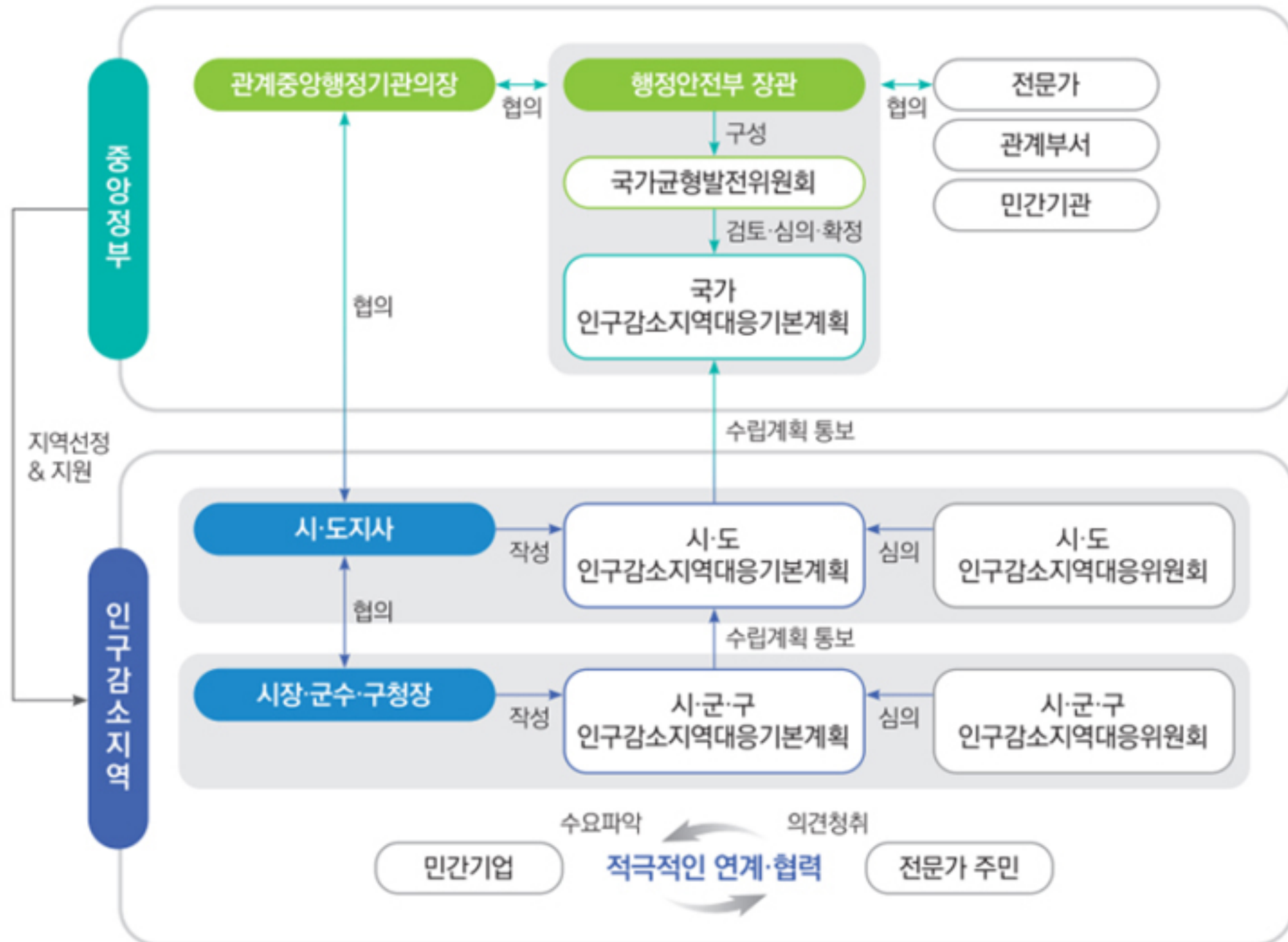
- 2021년 정부에 의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시·군·구, 89개 시군구를 관할하는 11개 시·도
- 인구감소지역 지정 주기(5년)에 맞추어 1차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은 '22년부터 계획 수립('21.10.19.최초 지정)
-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등을 위해 설정한 권역(특별법 제 11조)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 2023.1.1)」 참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수립 절차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체계

-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 후 상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인구감소대응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심의와 변경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 및 관할 시·도에서는 특별법 제9조(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며 수립된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국가 및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체계 ●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 2023.1.1)」 참고

02.지자체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의 연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 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에서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투자계획과 연계해야 함을 명시함
- 이에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22~'23년)의 내용을 분석하여 전략적 중점과제 구성 및 사업발굴에 활용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 조달 방법을 강구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계획수립 시점 및 범위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주기(5년) 및 투자계획과의 연계를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된 2022년 기준시점으로 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함
- 단, 시행계획은 특별법이 시행된 '23년 부터 수립하며 기본계획과 연계·병행하도록 작성해야 함
- 1차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5개년 계획의 계획기간 : '22년~'26년
- 2차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5개년 계획의 계획기간 : '27년~'31년(예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발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함
- 국가 및 지자체는 지역의 인구 유출입과 관련한 입지 특성 및 여건을 분석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적용 대상 범위가 확장(정주인구 → 생활인구)됨에 따라 다양한 유입 전략 발굴·시도 가능함
-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인구, 체류 인구, 외국인등록인구를 의미함(「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03.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향후 과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할수 있는 제도적 환경개선 필요

- 지역이 여건 미치 필요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개선 필요
 - 한정된 인력과 시간으로 인해 지자체가 사업기획·발굴·선정단계에서 많은 애로를 겪는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충분한 기획 시간 및 예산지원, 다부처 통합 컨설팅 운영, 중앙-지역 연계지원조직 구성 등을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자생적 자원 운용 방안 모색을 통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인구감소지역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10년의 일몰 기한을 갖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뿐만 아니라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 자원 조달 방법을 다각화하고,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자생적인 자원 운용 방안을 발굴하려는 노력 필요
 - 재원으로서 의존도가 높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이 끝나면 지역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추진동력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타 기금사업과의 연계, 자원 간의 연계, 지역 간의 연계를 계획수립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명확한 생활인구 기준 제시 및 활용방안 모색필요

-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의 대응정책 발굴·운영과정에서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특히, 체류인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념, 범위, 측정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활인구를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 윤소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알기쉬운 정책용어



알기쉬운 정책용어



알기쉬운 정책용어

2023.2.17.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코로나19 확진자 4~5명 중 1명은 '기침·가래', '피로감' 등의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자가 비접종자에 비해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구분	국민건강영양조사 (만1세 이상)	지역사회건강조사 (만19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의 4주 이상 증상 경험률	확진자의 24.7% * 여자 30.7% > 남자 16.1%	확진자의 19.9% * 여자 24.7% > 남자 14.2%
4주 이상 증상 종류 (중복응답)	'기침, 가래', '피로감', '인후통' 순	'기침, 가래', '피로감', '인후통' 순
예방접종여부에 따른 4주 이상 증상 경험률	비접종자 44.8% > 접종자 30.0% * 만19세 이상 성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력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	비접종자 23.4% > 접종자 19.7% * 조사대상자의 설문 응답결과 분석

* 제시된 결과는 가중치 반영표준화 등 적용하지 않은 잠정치임
* 접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 이상(만19세 경우 1차) 완료한 자, 비접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

5/6

2023.2.17. 질병관리청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관련 상세 분석 결과는 국가건강조사 분석보고서인 '국민건강통계플러스'와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월말 발간 예정)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http://kdca.go.kr>)을 참고하세요.

처음으로

6/6